

베트남의 권리의식과 정치변화*

정연식**

I. 서론

시장경제체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베트남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측은 선부른 것이었다. 공산당이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베트남의 폐쇄적 정치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의 정치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거의 모든 변화의 요인들을 나열한 후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궁극적으로는 결코 틀리지 않을 결론을 제시하여 왔다(Joiner 1990; Shultz and Le 1993; Brown 1996). 그 결론이란 사회주의권의 몰락,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세계적 확산,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국경을 무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팽창 등과 같은 거시적 흐름으로부터 베트남도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특히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민주화의 물결”로 일컬어지는 현상에 특별히 고무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

*) 이 논문은 1999년 한-아세안 학자 교류 프로그램에 의해 연구되었음. 베트남 현지조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논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박사명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에 베트남 역시 그러한 민주화의 조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한 경제적 변화를 지향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거시적 접근, 특히 세계적 경향을 강조하는 견해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은 최소한 베트남의 경우만큼은 유용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비록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정치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이차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변증법의 논리를 우리는 베트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변화의 일차적 요인은 내부에서 찾아야만 한다. 외부 변화요인의 효력 발휘 여부는 내부 모순의 대립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의 경우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체제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리라는 관점은 여전히 타당하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은 국가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사회,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사회의 출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사회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정치변화에 대한 연구도 변화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사회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방법론적 난제는 어떻게 그 역학관계를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명쾌한 방법은 국가와 사회가 충돌하는 현장을 누적적으로 포착하여 역학관계를 가늠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회의 힘이 국가의 힘과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추월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체제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 이 크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방법은 이미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후에야 설명력을 가지는 사후설명적인 방법이 되기 쉽다.

변증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사회 그 자체를 대립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국가와 사회는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모순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가와 사회를 대립물로 설정하는 방법은 모든 정치변화의 요인을 국가와 사회간의 모순으로 환원하게 되고, 따라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정치체제가 다른 특정한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간의 차별적 인식을 정치변화의 일차적 요인인 내부의 모순으로 설정하고 베트남 민중의 권리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권리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란 국가는 과거의 일원적 국가-사회의 관계에서처럼 민중의 권리가 계속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 사회는 그러한 국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권리의 범위에 대한 국가와 사회간의 인식 차이가 크면 클수록 모순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음을 뜻하고, 따라서 변화를 향한 변증법적 동력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하부구조의 변화에서 바로 민주주의라는 상부구조의 구축을 기대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초점을 달리한다. 물론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체제는 가장 친화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새로운 상부구조의 출현이 체제수호를 위해 작동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상부구조의 완성 단계보다는 초기 단계인 일상의 의식 변화에서 상부구조 변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민중의 권리의식을 파악하는 접근법이 과거의 정치문화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밝힌 후, 베트남 민중의 권리의식과 국가가 제시하는 공식적 권리개념을 대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정치문화론의 재발견

권리의식이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규범적인 정향이다. 사실 규범적 정향, 즉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념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찍이 토크빌은 미국인들의 실용주의는 협상과 타협을 추구하게 하고 이러한 자세가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베버적 전통 속에서 알먼드로 대표되는 초기

근대화론자들은 정치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체제 구성원들의 규범적 정향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결고리임을 밝히고자 하였다(Almond and Verba 1963; Pye and Verba 1965).

그러나 정치문화론은 곧 비판의 폭격을 받고 무너지는데, 좌파들로부터는 그것이 허위의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합리적 선택이론가들로부터는 그것이 비행태적이라는 비판을, 그리고 제3세계로부터는 그것이 서구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문화론자들은 한때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연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Almond and Verba 1980; Inglehart 1988). 그 이유는 정치문화론에서 발견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정치문화론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문화론을 동어반복 수준에 머물게 하는 정치문화의 개념이다. 예컨대, 알먼드와 버바의 고전적 개념은 “특수한 정치정향들, 즉 정치체계와 그것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체계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태도”로 정치문화를 정의하고(Almond and Verba 1963, 13-14), 다이아몬드는 “정치체계와 그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지배적인 신념, 태도, 가치, 이상, 감정, 평가”로 정의한다(Diamond 1994b, 7).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 개념을 민주주의 발전의 독립적 변수로 개념화할 때 발생한다. 정치문화 개념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던 초기의 학자들은 정치문화를 개념화함에 있어서 정치구조와 일치하는 규범적 정향을 채택하는 알먼드와 버바의 방법(Almond and Verba 1963, 21)을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그 결과 소위 “시민문화”(civic culture)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적 문화를 설정하고 그 요소로 타협, 관용, 신뢰, 합리성, 정치적 효용 등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범적 정향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화가 제공 할 수 있는 결론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정향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같은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치문화가 이러한 개념적 환원의 문제를 극복하고 규범적 차원의 공고화 개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

민주적 체제하에서도 존재하는 개념, 정도의 차이를 통해 공고화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암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문화론의 두 번째 문제점은 결정론적 속성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와 정치문화의 관계에 대한 초기의 정치문화론은 정치문화를 정태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정치문화가 정치적 구조와 정치적 행위의 속성에 선행하므로 정치적 구조와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론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정론적인 태도는 중남미와 아시아의 정치문화에 대한 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요지를 암축하면 전통적인 비민주적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¹⁾ 그러나 정치문화는 결코 정태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내적, 외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치문화를 상수로 취급하는 태도는 소위 “시민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에 대한 냉소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민주화를 위한 정치문화의 개념은 “시민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문화”가 성숙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포착해야만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정치문화론에 입각한 민주화 연구가 지나치게 엘리트 정치문화에 집착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협상, 타협, 관용 등을 강조하는 시민문화론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엘리트들의 신념과 헌신을 공고화의 핵심적 요소로 파악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원칙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한

1) 문화적 전통의 상이성을 민주화의 가능성 그 자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Bell et. al. 1995). 후자의 태도는 문화적 상대주의로서 문화적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와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민주화에 대해 다원주의 모델보다 조합주의 모델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위어다(Wiarda 1973)를 참고. 그러나 위어다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문화적 상대주의와 문화적 결정론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Pye 1985).

민주주의와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 엘리트들의 합의적 일체감의 존재 여부다”라고까지 주장하며 엘리트들의 정치적 정향을 강조한다.²⁾ 비록 권위주의 정권을 봉괴시키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모든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적 정향으로 충만하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개념은 더 이상 쓸모 없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엘리트 중심적 접근은 공고화의 진정한 핵심이 민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다. 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반민주 세력을 상대로 전략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이 배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투쟁하고자 하는 정치적 정향이 민중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엘리트들의 정치적 정향만으로 공고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화를 위한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엘리트에서 민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

요컨대 민주화가 요구하는 규범적 정향을 규명하는 작업에 정치문화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고화된 민주주의에서만 발견되는 정치적 정향 대신 민주주의로의 이해가 시작되기 전에도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정향을 선택하여 그 정향이 민중 속에서 심화되어 가는 역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대표적인 예로 O'Donnell, Schmitter, and Whitehead(1986)을 들 수 있다. 인용구는 Diamond(1994, 6)에서 재인용.

3) 막달(Migdal)을 비롯한 일부 비교정치학자들은 체제의 양상은 민중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지배와 저항간의 소규모 충돌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민중의 일상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Migdal, Kohli, and Shue 1994). 린즈와 스텝판도 의견상 정치적 파괴력을 가지는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민중이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간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강조한다(Linz and Stepan 1996: 8).

III. 민주화와 권리의식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규범적 정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일차적 요인을 내부의 모순에서 찾는 변증법적 사고를 가동해야 한다.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규범적 정향을 둘러싼 모순의 대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정치체제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유도하는 규범과 준칙을 설정하고 실행한다. 그러나 체제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어진 규범과 준칙을 동일한 수준에서 수용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일부 구성원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러한 규범에 동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주어진 규범의 토대가 되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체제가 강요하는 정향과 구성원들의 정향이 대치될 때 변화를 향한 내적 모순이 성립된다(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 1992: 24-25).

물론 이러한 상황이 필연적으로 즉각적인 체제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강요되는 정향에 대해 상당수의 구성원이 거부반응을 나타내거나 만족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즉각적으로 지배적 규범의 혁신적 재편을 요구하거나 체제로부터 퇴장하지 않는다. 체제는 이러한 상이한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지지와 후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규범을 고수하려는 세력은 물리적 제재를 가하거나 포섭과 일시적 양보 같은 주변부적 전략으로, 혹은 부차적 하위 모순에 구성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모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략으로 일시적으로는 변화의 동력을 제동을 가할 수 있다. 이때의 제동력은 체제유지 세력에게 주어진 물리적, 인적 자원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제동력이 클 경우 변화의 동력은 잠재력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모순은 체제의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며 그 모순은 궁극적으로 혁신적 변화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정치체계의 혁신적 변화는 가치와 상징의 차원에서 새로운 공통의 규범을 형성하면서 변증법적 변화의 과정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정치문화론이 제시하던 규범적 정향들—종용,

관용, 신뢰, 타협 등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개념화하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체제가 관용의 가치를 강요하고 구성원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설혹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제의 혁신적 변화 특히 민주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모순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민중의 권리의식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개념으로서 희구하고, 획득하고, 포기하고, 빼앗기는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물이다. 예컨대, 비록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통치자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그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권리라는 인식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하고 수호된다.⁴⁾ 그러므로 관용이나 중용과 같은 추상적 개념과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철저히 비민주적 사회라 할지라도 민중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는 부여된다. 단지 비민주적 정권에 의해 제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체제에서도 민중은 주어진 권리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이것은 민중의 권리의식이 민주화 이후에만 생성되는 규범적 정향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그 경계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권리는 영합적(zero-sum) 속성을 지닌다: 민중에게 제한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고 민중의 권리확대는 국가가 독점하던 권리의 획득을 의미한다.⁵⁾ 이것은 곧 국가와 사회간에, 정권과 민중간에 권리를 둘러싼 변증법적 모순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적 모순은 정치적 변화를 향한 동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본질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4) 민중의 권리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 공고화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민주화 초기의 극단적 개인주의는 오히려 공고화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5) 엄격히 말하자면 권리의 총합이 정태적이지는 않다. 예컨대, 동성애의 권리와 같은 새로운 권리가 관념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창출된 권리라 할지라도 곧 획득의 대상이 되므로 대립 세력간의 영합적 속성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제한하고자 하는 정권의 존재에 있다고 본다면 민중의 권리에 대해 체제가 강요하는 규범적 한계를 상수로 취급할 수 있고, 이에 민중의 권리의식을 대비하여 모순의 대립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민중의 권리에 대한 정권과 민중간의 인식차가 크면 클수록, 즉 민중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제한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할수록 체제변화를 향한 동력이 증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 반적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비례적 함수관계에 있는 현상은 개인적 권리와 권리의식의 확대라는 매개변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경제의 활성화는 최소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필요한 권리만큼은 국가로부터 사회로 이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획득되고 향유된 권리는 또 다른 권리를 요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고유의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정책결정의 과정까지 장악하는 방식으로 권리와 권리의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와 꾸준한 경제발전이 의미하는 바는 베트남 역시 비록 그 속도는 완만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권리의식의 팽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권리의 범위를 둘러싼 내적 모순을 주요 동인으로 보는 관점은 경제발전의 정도와 관계없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경우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인도의 경우처럼 경제발전과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권리의식이 투입되고 그것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민중 속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30년에 걸친 저항의 역사를 통해 자유의 소중함이 민중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권리의식이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통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한 권리의식이 변화할 가능성성이 존재한다. 베트남에서도 현재 외부로부터의 투입경로가 십 년 이상 열려있었다는 점에서 권리의식의 변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IV. 베트남의 권리의식

권리의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는 문헌연구로서 문학작품, 철학서, 매체 보도문, 국가 문서 등을 통해 권리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사용되어져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설문조사와 같은 조사를 통해 현재 민중이 공유하고 있는 권리의식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상호보완적이므로 두 접근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첫 번째 방법으로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호찌민이 권리에 대해 언급하였던 기록과 권리에 대한 베트남 헌법 조항의 변화를 추적하고, 두 번째 접근법으로 호찌민市를 중심으로 실시한 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권리에 대한 민중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권리의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 배경을 이루는 베트남 정치문화의 구조가 중층적이라는 점이다. 그 질곡의 역사가 응변하듯이 베트남의 정치문화 구조는 동남아적인 요소, 중국 혹은 유교적인 요소, 프랑스와 미국에 의해 유입된 서구적 요소, 그리고 마르크스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으며 그 혼재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호찌민市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서 행한 조사 결과가 결코 모든 베트남인들의 권리의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남부가 가지고 있는 북부의 지배에 대한 뿌리깊은 지역적 반감, 과거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활동과 더불어 남베트남 정부에 맞서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전개했던 저항의 경험과 그에 대한 생생한 기억, 북부에 비해 서구 문화의 세례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장경제체제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권리의식의 팽창 정도가 남부에서 가장 클 것이고, 따라서 권리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간의 모순도 남부에서 가장 먼저 첨예화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부지역이 결코 베트남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권리의식의 확산과 심화에 따른 변화의 가

능성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1. 공식적 권리개념

1) 호찌민

권리와 자유에 대한 호찌민의 생각을 살펴보는 일은 비록 그가 사상가로서의 면모는 부족했지만 그의 생각이 혁명의 구심점이었고 특히 1941년 귀국 이후 그의 추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공식적 권리개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게 바치는 국민들의 존경심, 그리고 국가 영역에서 그가 차지하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만약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그의 생각이 현재의 공식적 권리개념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고 확장된 것이라면 권리 확대를 위한 투쟁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호찌민의 생각은 1920년 투르(Tours)에서 열렸던 프랑스 사회당 대회에서 행한 발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인도차이나 대표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도 발언의 자유도 없습니다. 물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여행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어서 완전한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Ho 1994: 16).

이는 당시 호찌민이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최소한 프랑스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 까지는 반복되어 나타난다. 1921년에서 1923년 사이에 작성한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한 심판』에서 호찌민은 식민지 연대의 결성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여러분들은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심지어 여러분들의 땅에서 조차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Ho 1994: 20).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국회와 베르사이유 회담 참가국에게 호찌민이 제시한 여덟 개의 요구사항 가운데 네 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이주와 여행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였다(Ho 1994: 23).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창당되었을 때 발표한 호소문에서도 민중에게 모든 민주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당의 10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못박고 있다(Ho 1994: 41). 또한 호는 민주전선 시기(1936-1939) 당의 노선에 관한 코민테른 보고서에서 파시스트들의 책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분간 즉각적인 독립과 국회 구성과 같은 지나친 요구를 자제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같이 기본적인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언술과 행적으로 추측컨대 호찌민은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자유와 권리 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며 행한 연설에서 호는 자유와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신은 모든 이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하였다. 그러한 권리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를, 프랑스 혁명의 권리선언문으로부터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항상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만 한다.”는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행복을 누리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진리”임을 천명하였다 (Ho 1994: 53).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에 문맹퇴치를 호소하는 연설에서도 호찌민은 각자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민족의 독립 유지에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권리의식의 정치적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호의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46년 12월에 행한 연설에서 호는 베트남인들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독립과 자유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력한 대불 항전 의지를 밝히는데(Ho 1994: 70), 이후로 자유는 독립과 병치되기 시작하고 점차 자유를 언급하는 회수가 줄어들었다. 자유를 언급하게 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구체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유는 간단히 독립, 즉 외세로부터의 해방과 동일한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민주주의”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대신 독립을 위한 의무, 단결, 당에 대한 충성 등이 더욱 빈번하게 언급된다. 예컨대, 1958년에 발표된 “혁명윤리”에서 호는 “낡은 사회가 남긴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한 흔적은 개인주의”라고 지적한 후 당원들에게 개인주의의 극복과 “당과 인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호소한다(Ho 1994: 197-199).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권리보다 전체의 단결과 의무를 강조하는 태도는 1969년 그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행한 “혁명윤리를 고취하고 개인주의를 깨끗이 청산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Ho 1994: 352-362).

그렇지만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 이후 호찌민의 사고가 반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1959년 개정 헌법에 관한 설명에서도 호는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가는 모든 인민의 민주적 권리를 발전시켜... 국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Ho 1994: 224), 1967년 기층 간부들의 연수에 참석해서 가진 대화에서도 당원들이 “진심으로 민중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o 1994: 314). 다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독립, 그리고 독립을 위한 저항과 단결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비례해 자유주의적 권리개념은 조금씩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베트남 헌법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 헌법에서도 나타난다. 베트남의 헌법은 1946년 제정된 후 1959년, 1980년, 그리고 1992년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6년 헌법은 제1장에서 베트남 정치체제의 성격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다음 제2장에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2장의 전반부는 베트남 국민이라면 종족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전제 아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와 여행의 자유(10조)를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12조)도 인정되고 있으며, 선거의 4대 원칙(17조), 선거권과 피선거권(18조)도 명시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항은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국민소환권(20조, 41조, 60조)과 국민투표권(21조, 32조, 70조)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946년 헌법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편이지만 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을 대체로 모두 포함하고 있어 민주적 정신만큼은 명료하게 드러나는 헌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도 제도화되지 못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지도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1959년 헌법은 1946년 헌법을 대폭 보완하여 조항의 수를 늘이고 그 내용도 더욱 복잡해진다.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하는 1장에 이어 2장은 1946년 헌법이 다루지 않았던 경제와 사회체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⁶⁾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제3장으로 밀려나지만 전체적으로 1946년 헌법에서 보장되었던 권리들이 재산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위의 권리(25조),

6) 1959년 헌법개정이 추구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북부에서 사회주의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었다. 1957년부터 실시한 “사회주의를 향한 과도기적 개혁”의 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당 지도부는 헌법을 개정한 후 제1차 사회주의의 5개년 계획(1961-1965)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종교의 자유(26조), 행정보상권(29조), 노동권(30조)과 휴식권(31조) 등이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가되었다.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24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일임금원칙, 유급 산후휴가를 명시하여 여성의 권리 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체의 자유, 그리고 법원의 동의 없는 체포 금지 조 항(27조)을 추가하여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호찌민의 언술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시기에 민주집중 제의 원칙 아래 공산당(당시에는 노동당) 지배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는 축소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1946년 헌법이 보장하였던 국민 소환권과 국민투표권은 1959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이보다 더욱 부정적인 변화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조항(38조)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과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민중의 권리와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959년 헌법이 비록 자유와 권리의 항목은 추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1980년 헌법은 1959년 헌법과 대동소이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분리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명기하여(54조) 국민의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에 대한 강조는 1959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67조, 그리고 종교의 자유 또한 법과 정책에 위배될 수 없다는 68조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교육, 의료, 주택을 보장하는 60조, 61조, 62조, 그리고 고문 금지를 추가하여 신체의 자유를 강화한 69조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 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1980년 헌법은 1959년 헌법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도이머이 정책이 실시된 이후 채택된 1992년 헌법은 몇 가지 획기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1959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던 재산권이 부활되었으며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기업활동의 자유, 상속권 등을 보장한다(57조와 58조). 거주와 여행의 자유도 복원되었다(68조). 이러한 변화는 도이머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 하부구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5장의 서두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인권이 시민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부분이다(50조). 이러한 맥락에서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도 첨가되었으며(72조), 국민투표제도 부활하였다(53조). 또한 무엇보다도 1959년 헌법 이후 첨가되었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유보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하에서 최소한 법적으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삭제된 유보조항은 여전히 정부의 지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베트남 헌법의 변화를 요약하면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이 충분히 발현되었던 1946년 헌법에서 출발하여 권리의 내용은 확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제한하였던 1959년과 1980년의 헌법을 거친 후 다시 자유주의적 제반 권리의 보장을 하는 1992년 헌법으로 변화해 왔다고 하겠다. 베트남의 민중은 이러한 변화,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까? 그들의 권리의식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들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까?

2. 민중의 권리의식

현지조사는 2000년 7월 호찌민 시와 뚝나이 성에서 실시되었다. 먼저 뚝나이 성 비엔호아 공단에 위치한 한 한국인 투자기업에서 노동자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호찌민 시에서는 호찌민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⁷⁾ 노동자들과의 면접은 대부분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고, 대학생들을 위한 설문지는 한 대학생과의 면접을 통해 미리 준비된 질문들의 적실성을 검토한 후 작성되었다. 노동자들의 학력은 대졸 2명, 고졸 4명을 제외한 24명이 중졸로서 정치적 의식의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과학 전공 대학생들과 큰 대조를 이룬다.

먼저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의 목적을, 학생들에게는 학생회와 청년동맹의 목적을 질문하여 해당 단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의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보호'라고 응답한 경우가 18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자들을 도와준다' 4명(13.3%),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3명(10.0%) 등의 응답이 나왔다. 노조의 목적을 '노동자의 권리보호'로 대답한 경우, 대부분 그 반응이 즉각적

7)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사는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럴 경우 독자적인 조사가 어렵게 되어 피조사자들의 응답 신뢰도가 현저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계 기업들은 거의 모두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에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베트남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의 경우,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업 중에 면접이 가능한 노동자들만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표본집단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노동자들의 수가 70명을 넘지 않는 기업이어서 비교적 무난하리라고 판단하였다. 면접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결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경우도 앞에서 밝힌 이유로 교내 휴게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편의포본추출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피조사자의 수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리의식을 읽어내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노조가 그러한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부합한다' 14명(46.7%), '보통이다' 9명(30.0%), '잘 모르겠다' 6명(20.0%), '아주 부합한다' 1명(3.3%)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노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8명(93.3%)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노조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국가의 조합주의적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⁸⁾

학생회의 목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들의 권리보호'라고 응답한 경우가 38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친목도모'가 10명(18.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년동맹에 관한 같은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20명(37.0%)이 '학생들의 권리보호'라고 답하였고, 22명(40.7%)이 '학생들의 친목도모'라고 답하였다. 그 외 7명의 학생들이 '국가발전의 보조'를 청년동맹의 목적으로 답하였다. 학생회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부합한다'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31명(53.4%)과 20명(34.5%)을 차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년동맹에 관한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부합한다'와 '보통이다'의 응답이 각각 36명(63.2%)과 18명(31.6%)을 차지해 국가의 조합주의적 정책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1)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기본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노골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아주 다양한 대답이 제공되었다. 그 가운데 '돌아다닐 자유'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한 경우가 6명(2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부할 권리' 5명(16.7%), '삶을 영위할 권리' 그리고 '삶을 개선할 권리' 5명(16.7%) 언급

8) 베트남의 조합주의적 전략에 대해서는 Jeong(1997)을 참고.

되었다. 이는 모두 현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인데 학습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그냥 '있다'고 대답한 경우, '아주 많다'고만 대답한 경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각각 3명(10.0%)이었으며, '원하는 것을 얻을 권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노동할 권리'를 언급한 경우도 각각 3명(10.0%)이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 외에는 모두 한번씩만 언급된 경우로서, '오락을 할 자유', '문화생활을 할 권리', '휴식할 권리', '사회보장제도',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 '사회활동을 할 권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항의할 권리'가 언급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를 권리에 포함하는 자유주의적 권리의식이 베트남에서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권리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들로서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민중의 인식이 모순적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자유', '있지만 말하기 곤란하다',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많지만 제한적이다: 특히 정치적 활동은 안 된다', '법적으로는 많으나 실제로는 별로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로서 자신들의 권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현실감이 결여된 추상적 개념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신은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일상의 권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임금에 관한 권리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을 받을 권리'를 언급한 경우가 10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너스를 받을 권리' 4명(13.3%), '급여를 많이 받을 권리' 1명, '초과 수당을 받을 권리' 1명, '임금 인상을 요구할 권리' 1명이 있었다. 이들 17명 가운데 12명에게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회사를 위해 참고

기다릴 수 있겠는지를 질문하였는데 3명(25.0%)은 조금 참아보겠다고 대답하였고, 5명(41.7%)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으며, 4명(33.3%)은 임금이 무조건 지불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들이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일체감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임금을 받을 권리’ 외에는 7명(23.3%)이 ‘노동할 권리’를, 4명(13.3%)이 ‘있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번씩 언급된 권리로는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작업복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휴식할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잘 모르겠지만 노동계약서에 보장되어 있다’는 대답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반응으로는 ‘노동자만이 가지는 권리는 없다’고 대답한 경우와 ‘노조가 종속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는 응답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었고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는 노동이 자신들 삶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취업 전 노동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업 전 노동교육은 노동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서 베트남노동연맹의 해당 지역 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데, 한 노동자는 노동교육의 내용 가운데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친노동적 성격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정연식 1998).

2) 대학생들의 권리의식

‘당신은 학생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학생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응답을 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응답은 ‘공부할 권리’로서 35명(5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일할 권리’와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언급한 학생이 각 9명(15%)씩 있었고, ‘학교행사 및 활동에 참가할 권리’ 8명(13%), ‘연구할 권리’ 6명(10%), ‘모르겠다’ 6명(10%), 그리고 오락이

나 여가활동을 '즐길 권리' 5명(8%)이 있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반응으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건의할 권리', '[교내]선거권', '청년동맹에 참가할 권리'를 언급한 경우가 각 2명씩, 그리고 '학교의 사정을 알 권리' 1명으로, 비록 교내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나 참여를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준다.

그 외 '자유', '평등', '봉사할 권리', '여행할 권리', '운동할 권리', '시험 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친구를 사귈 권리',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권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한 번씩 언급되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한 대학생은 교수의 강의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교수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정치적 의식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반응으로는 '[학생들이] 정책적으로 우대 받을 권리' '옳은 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향상시킬 권리' 등이 있었다. 특히 '투쟁할 권리'라는 표현은 주목할 만한데, 비록 한번만 언급되었으나 다른 질문 항목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학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노동자들에 비해 확장된 권리의식을 보여주었다. 22명(36.1%)이 '자유'를 언급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평등' 17명(27.9%), '배울 권리' 14명(22.9%), '행복을 추구할 권리' 14명(22.9%), '삶을 영위할 권리' 8명(13.1%), '노동할 권리' 8명(13.1%), '모르겠다' 6명(9.8%), '종교의 자유' 5명(8.2%) 등이 따랐다. '자유'와 '종교의 자유' 외에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언급한 학생이 2명, '민주'를 언급한 학생이 2명, '정치적 자유' '생활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할 권리'를 언급한 학생들도 1명씩 있어서 이를 모두 합할 경우 36명(59.0%)이 자유를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유주의적 권리의식이 대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

로서의 자유가 제한될 경우 국가와 학생 간의 모순이 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학생은 각 1명씩에 불과해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권리의식은 아직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학생들의 응답 가운데 높은 빈도를 기록한 일상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평등을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점인데 이는 사회주의 교육이 넓은 특징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유재산을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한 학생은 4명(6.5%)이 있었고 1명은 '일한 만큼 이익을 얻을 권리'를 언급하였다. 그 외 '시민권', '선거권', '정의', '의료혜택', '오락을 즐길 권리', '연구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신체를 방어할 권리', '여가생활을 할 권리', '결혼할 권리',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 '너무 많다' 등 의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 법률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지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언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와 '평등'을 언급한 학생의 수가 22명과 17명에서 각각 15명(25%)으로 감소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실제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노동할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언급한 학생의 수가 변하지 않은 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언급한 학생의 수가 14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 학생의 수가 5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학생들이 '노동할 권리'나 '사유재산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을 인지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는 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한 결과로 판단한다면 자신들의 권리가 법으로 모두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만으로 권리에 대한 국가와 대학생들간의 모순이 심화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오히려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 대부분은 개정 헌법에 명시된 것들로서 부분적 자유화를 통해 사회로 이양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독점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권리-예컨대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베트남의 정치체제가 비록 그 속도는 완만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일원주의에서 제한적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 급격한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 베트남 대학생들의 권리의식 수준에서 볼 때 만약 그러한 체제변화의 방향이 되돌려질 경우, 즉 주어졌던 권리의 일부가 다시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면 심각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편지쓰기'와 권리를 위한 '투쟁'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만약 학생으로서의 당신의 권리가 학교에 의해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참는다' 5명(9.6%), '개인적으로 학교측에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15명(28.8%), '동료학생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16명(30.8%), '정부에 편지를 써서 건의한다' 2명(3.8%), '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8명(15.4%), '청년동맹에 도움을 요청한다' 6명(11.5%)의 결과가 나왔다. '참는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에 불과해 대학생들의 경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정부에 대해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만약 당신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참는다' 2명(3.4%), 잘 모르겠다 7명(11.9%), '정부기관에 편지를 써서 정책개선을 건의한다' 34명(57.6%),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한다' 16명(27.1%)의 결과가 나왔

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만약 당신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참는다' 3명(10%), '정부 기관에 편지를 써서 정책개선을 건의한다' 16명(53.3%), '잘 모르겠다' 11명(36.7%)의 응답을 하였다. 이를 교차분석하면 정부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학생들이 취할 행동과 노동자들이 취할 행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text{Chi-Square}=0.014$, $DF=3$). 이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노동자들에 비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결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만약 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참는다' 3명(5.0%), '학생회와 청년동맹의 지시를 따른다' 17명(28.3%), '정부기관에 편지를 써서 정책개선을 건의한다' 36명(60.0%), '잘 모르겠다' 4명(6.7%)으로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는 '만약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노동자들은 '참는다' 3명(10.0%), '정부기관에 편지를 써서 정책개선을 건의한다' 15명(50.0%),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한다' 2명(6.7%), '잘 모르겠다' 10명(33.3%)의 응답을 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 역시 학생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text{Chi-Square}=0.001$, $DF=4$).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성이 확인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유지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28명이 구체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참는다' 2명, '잘 모르겠다' 5명, '한번만 더 건의해보겠다' 1명, '학생회와 청년동맹에 도움을 요청한다' 2명, '당 최고위층에게 편지를 쓰

겠다' 1명 등이 있었고, 나머지 17명은 각자 표현은 달랐지만 정책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정부기관에 계속 편지를 쓰겠다', '방송국과 신문사에 호소하고 보도를 요구하겠다', '해결될 때까지 요구하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다른 학생들과 힘을 합해 투쟁하겠다', '끝까지 선전활동을 펼치겠다'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의 경우, 같은 질문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할 리 없다', '건의하면 다 시정한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건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등의 응답과 함께 '계속 건의한다'는 응답은 3명에 불과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과 노동자들 공히 '정부기관에 편지를 써서 정책개선을 건의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인데, 이는 당과 정부기관에 편지쓰기를 장려하여 이익표출의 경로를 제한함과 동시에 불만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편지쓰기는 1991년부터 장려되었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 접수된 편지만 하더라도 1991년 7,168통에서 1994년 13,580통으로 급증하였다(*Tap Chi Cong San* 95/04: pp. 45-47; *Nhan Dan* 96/03/13-14). 실제로 '편지를 써서 건의하겠다'라고 응답한 노동자들 가운데 3명은 똥나이 성 정부와 노동연단에 편지를 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 이들은 접수된 편지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반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노조 관계자들의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해 편지로 접수된 건의사항들에 대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실제로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에서 나타난다. 학생들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한 학생이 16명이나 되는데 반해 노동자들의 경우 2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당신의 권리는 누가/무엇이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확인된다. 노동자들의 경우 10명(33.3%)이 노조, 6

명(20.0%)이 정부, 8명(26.7%)이 법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학생들의 경우 4명(7.1%)이 청년동맹, 8명(14.3%)이 정부, 1명(1.8%)이 공산당, 그리고 42명(75%)이 법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 이 경우에도 학생들과 노동자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Chi-Square}=0.001$, $\text{DF}=4$). 즉 학생들은 정부나 청년동맹보다도 법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경우 법보다는 노조와 정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의 조합주의적 정책이 노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과 노동자를 통틀어 베트남공산당을 자신의 권리 보호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1992년 헌법을 개정한 후 추진되었던 행정부의 역할 강화에 따라 베트남인들의 의식 속에 정책수립과 집행의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부와의 거리가 좁혀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행정부에 대한 당의 간섭과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행정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개혁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이은호 1994; Stern 1993). 비록 최근에 이르러 권력의 분산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당으로 권력이 재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이한우 2000; Vasavakul 1997), 이미 당과 민중의 친밀감이 과거 혁명기의 수준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이념적, 감정적 동화의 수준이 감소한 상태에서 만약 사회에 대한 당의 간섭과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변화를 향한 베트남 내부의 모순은 심화될 것이다.

V. 결론

베트남의 정치변화 가능성과 방향, 그리고 속도에 대한 연구는 변증법적 시각에서 내부의 모순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내적 모순으로 민중의 권리의식을 설정하고 베트남 현지조사를 통해 그 방법론적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간의 차별적 의식은 변화를 향한 내적 모순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모순의 정도는 민주화의 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공고화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며, 그것은 곧 권리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권리에 대한 민중의 인식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는 베트남 민중의 권리의식이 아직 국가가 사회에 허용한 권리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간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이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헌법의 변화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경계가 과거에 비해 분명히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희망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생들의 권리의식이 그 경계의 언저리에 위치한 듯하며, 최소한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제한되거나 축소될 경우 저항적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만약 베트남의 정치체제가 과거의 경직된 일원주의적 위치로 회귀를 시도할 때 확장된 민중의 권리의식은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호찌민이 남긴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어구는 그들의 명분과 구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소수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파괴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의 권리의식과 전체 민중의 권리의식 사이에 교집합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디에서도 학생들만의 힘으로 체제변화를 이룩한 경우가 없다는 사

실이 베트남에서만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자유, 권리, 정치변화, 민주화

참고문헌

-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 1992. “사회변동과 발전.” 이신행 편. 『정치변동이론의 새로운 흐름』 pp. 21-51. 서울: 협성사.
- 이은호. 1994. “베트남의 사회주의체제 변화와 개방정책.”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변동』 pp. 197-218. 서울: 서울프레스.
- 이한우. 2000. “베트남의 정치개혁과 체제의 지속.” 2000년도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회의 논문집.
- 정연식. 1998. “베트남의 혁명윤리와 사회주의시장경제: 국가와 노동자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4: 259-275.
- Almond, Gabriel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lmond, Gabriel and Verba, Sidney (eds.). 1980. *The Civic Culture Revisited*. Boston: Little Brown.
- Bell, Daniel and et. al. 1995.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Brown, Frederick. 1996[1998]. “Vietnam’s Tentative Transformation.” Larry Diamond and Marc Plattner (eds.). *Democracy in East Asia*. pp. 184-198.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94. “Rethinking Civil Society: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5(3): 5-17.

- Diamond, Larry (ed.). 1994b.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Boulder: Lynne Rienner.
- Ho Chi Minh. 1994. *Selected Writings (1920-1969)*. Hanoi: The Gioi Publishers.
- Inglehart, Alex. 1988. "The Renaissance of Political Cultu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1203-1230.
- Jeong, Yeonsik. 1997. "The Rise of State Corporatism in Vietna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9(2): 151-171.
- Joiner, Charles. 1990. "The Vietnam Communist Party Strives to Remain the Only Force." *Asian Survey* 30(11): 1053-1065.
- Linz, Juan and Stepan, Alfred.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igdal, Joel and et al. 1994. *State Power and Social For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Donnell, Guillermo and Schmitter, Philipe.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ye, Lucian. 1985. *Asian Power and Politics: The Cultural Dimensions of Autho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ye, Lucian and Verba, Sidney (eds.). 1965.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ultz, Clifford and Khai Le. 1993. "Vietnam's Inconsistencies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5(2): 179-194.
- Stern, Lewis. 1993. *Renovating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Nguyen Van Linh and the Programme for Organizational Reform, 1978-9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asavakul, Thaveeporn. 1997. "Vietnam: The Third Wave of State Building."

- Southeast Asian Affairs* 1997, pp. 337–63.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Wiarda, Howard. 1973. ‘Toward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Political Change in the Iberian-Latin Tradition: The Corporative Model.’ *World Politics* 25(2): 206–235.

Abstract

The Vietnamese Perception of Rights and Political Change

Yeon-sik Jeong

The widely shared expectation among Vietnam specialists that Vietnam would be no exception to the global trend of democratization in the 1990s turned out to be a mere speculation.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and the following economic development, the hegemonic communist party of Vietnam is still in power.

This article challenges the existing approaches of democratization and proposes instead an analysis on people's perception of rights. From a dialectical point of view,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best barometer of democratization and the ensuing consolidation process is the gap or contradiction between the official concept of rights sanctioned by the state and people's perception of rights.

In this perspective, Ho Chi Minh's thought on freedom and rights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codes on rights are analyzed in a chronological order. The result is that the official concept of rights has recently been liberalized, turning back to the liberal spirit held by Uncle Ho in the early years of revolutionary struggle.

For people's perception of rights, a survey was conducted on workers and college students in Vietnam.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their perception of rights has also been expanded but not to the extent to which a serious contradiction between the official concept of rights and their perception of rights is to emerge. It seems that therefore a dramatic democratization is not very likely to

near future. Nevertheless, the survey yielded a promising finding that students are likely to resist the state encroachment on their rights.

key words: rights, freedom, political change, democratization